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, 경기화관6층) TEL 031-242-3355, FAX 031-246-7947
업 무 1과 과 장 : 김 승 환

- 아 래 -

□ 대폐차요율인하제도지침 적용조건 (전지부 동일 조건)

구 분	적용기준(2021. 3. 1시행)
공제계약율	◦ 80%이상
공제계약 경력	◦ 2년이상
재허용연한	◦ 2년이상
말소차량	◦ 폐차·수출·이전
대체차량	◦ 신조차, 중고차, 자가용
요율 차액분	◦ 징수

⇒

보 완 (2021.7.1시행)
좌 등
좌 등
좌 등
단, 2021.7.1.일 이후 대폐차할인제도 적용 받은 차량부터 적용
좌 등
좌 등
좌 등
단, 2021.7.1.일 이후 말소차량부터 적용

□ 제도시행일 4개월 유예 (제도 시행일 : 2021. 07. 01)

- ✓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 부족등의 민원 해소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4개월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설정
⇒ '21.06.30일까지는 기존 각 지부 대폐차요율할인제도를 적용

□ 대폐차요율할인 재허용 연한 산정기준 보완

- ✓ 재허용연한은 제도개선 시행일('21.07.01)이후 대폐차요율할인제도 적용건을 기준으로 유효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
⇒ 유효계약기간 2년미만일시에는 대폐차요율할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

예시) 2021.07.05. 대폐차요율할인 적용을 받았다면 유효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2023.07.05일 이후에나 대폐차요율할인을 받을 수 있음.

- 이면계속 -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, 경기회관6층) TEL 031-242-3355, FAX 031-246-7947
업 무 1과 과 장 : 김 승 환

□ 제도시행일 이전 말소차량에 대한 적용방법 (요율차액분 납부여부)

- ✓ 제도 시행일(유예기간포함 '21.07.01) 이전 대폐차를 목적으로 차량을 말소(폐차,수출,이전)하였으나 대폐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조합원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함
- ✓ 보완내용
 - ⇒ '21.07.01이전('21.06.30까지) 대폐차를 목적으로 말소(폐차,수출,이전)된 차량이 제도시행일 이후 대폐차요율할인적용시 차액분 미납입
 - ⇒ '21.07.01이후 말소 차량은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대폐차요율할인적용이 가능함

□ 기타사항

- 금번 대폐차요율할인제도의 개선사항은 차액분 납부로 대폐차요율할인 적용을 받을 것인지 차액분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갱신요율로 대폐차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적 사항임. "끝".

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

경 기 지 부

